



4단계 BK21 사업

대학원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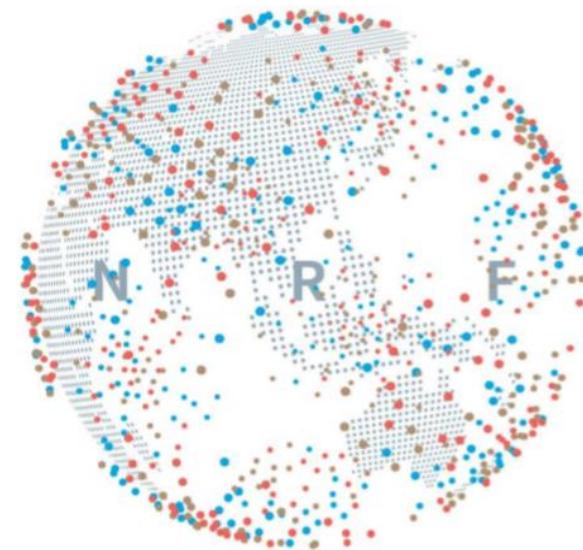
2021.1.



목 차

01 기본원칙

02 규정 주요 사항



◎ 대학원 혁신지원비(4단계 BK21사업 기본계획(2020.2.6.))

✓ 목적

- 대학원 차원의 제도개혁 비용을 지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방향성 수립 및 체제 구축
- 교육연구단 기반의 사업 운영에 따른 학문 분야 간 분절화를 보완하고, 대학원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

✓ 지원 원칙

- 대학원 차원의 제도개혁 비용으로 본부 중심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유도 및 연차별 평가를 거쳐 매년 차등 지급*
- *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20% 범위 내에서 대학원 혁신지원비 조정
-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교육연구단 지원금과 상호 전용 불가
- 미참여 학과 지원 또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비*로 사용 불가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럭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중앙관리가 원칙이며
대학원 혁신을 목적으로 집행, 특정학과만을 위한 단독집행 불가

1 사업비 편성

- 제22조(사업비 편성)** 사업계획서 내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차원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제도 개선 등 **대학원 본부의 대학원 제도 혁신 및 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23조(예산편성비율)** 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 지침 별표5에 따르며, **편성 비율은 2차년도부터 적용**
 *1차년도 사업비 이월금은 2차년도 사업비를 합쳐 사업비 편성비율 적용(10월 예정)
- 제24조(사업비 변경)** 대학 내 자체 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

▶ 주요 Q&A

Q1. 1차년도 사업비 잔액을 포함한 편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1. 1차년도 사업비 잔액은 연차평가(9월 이후) 결과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이후 2차 사업비에 포함되며, 편성 비율은 지침 별표5 준수

Q2. 1차년도에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2차년도부터 적용하면 1차년도에 초과비율로 편성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1차년도 사업비 잔액은 전액이월 가능하나, 1차년도에 사업비 초과편성한 금액은 2차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며, 지침 별표5의 편성 비율 준수

2차년도 사업비 총액

=

2차년도 대학원 혁신지원비

+

1차년도 이월금

편성비율 준수

2 인건비

- 제27조(인건비) 대학원 혁신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 직원) 인건비로 집행 및 대학원 혁신 사업 운영 및 대학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로 집행
- ※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부 채용 방식은 대학 자체 기준을 따름

 주요 Q&A

Q1. 내부 구성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1. BK21사업 참여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 소속 전임 교(직)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Q2. 기존에 대학에 존재하는 심리상담, 진로상담센터나 취창업센터에서 인력채용 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2. 대학원 혁신과 관련되어 채용된 인력은 모두 대학원 본부 소속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Q3. 대학원 교육·연구 지원에 필요한 보조 인력 중 단기인력(아르바이트)도 인건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요?

A3. 대학원 혁신지원비 중 인건비 비목에서는 단기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단기인력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기타 대학원 혁신 목적은 기타사업운영비에서 집행합니다.

3 국제화경비

제28조(국제화경비)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지출

(주요 집행제한 항목) 연차별 예산운영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1. 사업과 무관하며,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단기 해외연수 또는 국제학술대회 개최·참석 등 무분별한 해외활동
2. 해외석학 초빙·활용경비 지원 시, 실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업비 집행

 주요 Q&A

Q1. 대학원혁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이 있나요?

A1. 별도의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 시 교육연구단(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 공동 연구, 해외 학자 초빙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나요?

A2.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 구비합니다.

Q3. 학과에서 진행하는 해외 학자 초빙을 대학원 혁신지원비에서 일부 지원 가능하나요?

A3. 대학원 차원이 아닌 학과에서 진행하는 해외 학자 초빙은 교육연구단(팀) 국제화경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1)

 RA/TA 제도 운영에 따른 RA/TA 지원비

- BK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이 아니더라도 대학원 차원의 공통 교과, BK21 교육연구단의 교육과정 또는 연구활동 등 연관된 RA/TA 대학원생인 경우 지원 가능. 다만, BK21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지원 불가

 주요 Q&A

Q1. RA/TA 지원비도 인건비 상한액(박사 250만원, 석사 180만원)에 포함되나요?

A1. 대학원 본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RA/TA 제도에 따른 지원비는 장학금으로 학생 인건비 상한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생 또는 졸업생에게도 RA/TA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A2. RA/TA 지원비는 소속 대학 대학원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원 본부 차원에서 확립한 RA/TA 제도(지원기간, 지원액이 포함된 복무협약서 작성 등 대학 자체기준 마련)를 통해 서면협약을 체결한 인력에게 RA/TA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2)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프로그램 개발 관련 원고료 및 강의료 포함)

- 대학원 차원의 공통교과(Core Curriculum) 개발 및 운영 비용
- BK21 교육연구단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 대학원 차원의 산학 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 산업·사회와의 연계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

▶ 주요 Q&A

Q3. BK21 사업 미참여 학과에 지원할 수 없나요?

A3. BK21 사업 미참여 학과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이 불가하며, 대학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위에 제시된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하나요?

A4. 대학원 혁신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개발·운영이 가능합니다.

Q5. 교내 기관(어학교육원, 심리상담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하나요?

A5. 가능합니다. 단,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Q6. 프로그램 참여 인력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인력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나요?

A6. 해당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내부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포상지급이 가능합니다.

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3)

 대학원 차원의 전략적 인재육성을 위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비

- 우수인재 유치, 사회적 배려자, 리더십 우수자 등 특성에 맞는 대학원생 장학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편성액의 50% 이내 집행 가능,
장학금 지원 대상은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으로 한정

* 펠로우십 프로그램 또는 대학원생 장학지원제도를 통한 집행(구체적인 장학금 지원 제도 필요)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및 신임교원(임용 후 3년 이내 교원)의 교육·연구역량 증진 비용

- 대학원생 논문작성법,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 그 외 학업 지원 등 프로그램 구축 운영비
- 신임교원의 강의 능력 개발 및 대학원생 연구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제도 운영비(인센티브 성격 비목 집행불가)
-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식 지원 센터 운영비
- 대학원생 정신 건강 증진,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4)

 전문가 활용비

- 대학원 혁신에 요구되는 전문가 자문료 및 위원회(연구윤리, 대학원생 권익 강화 등) 위원 비용, 성과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비 등 전문가 활용비용으로 집행, 단 전임 교(직)원에게 수당 및 대학원 혁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 수당으로 집행 불가

 주요 Q&A

Q7. 참여교수 또는 BK21사업 미참여학과 교수에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나요?

A7. 미참여 교수를 포함한 내부 전임 교(직)원에게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원고료 또는 대학원 차원의 공통교과로 개발된 비정규 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강의료는 지급 가능합니다.

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5)

✓ (주요 집행제한 항목)

1. BK21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원 개인적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연수비, 연구수당 등)

2. 경상비 성격의 경비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3. 중복 및 이중지원 성격의 경비

- 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혁신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세부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주요 Q&A

Q1. 설문조사에 따른 사례비 또는 답례품 지급이 가능하나요?

A1. 대학원 혁신 목적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과 통상적인 수준의 사례비 또는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답변지 또는 수령자 서명부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5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제30조(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공용 연구공간 등 대학원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가능

- 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사업행정실 등 안전·환경 개선비
- 교육·연구 환경 개선 및 대학원 혁신 업무 추진인력 직접사용 목적의 기자재(PC,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 구입비
-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대학원생 취·창업 지원센터, 경력개발센터 등) 확충 비용

 주요 Q&A

Q1.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학생회관 일부 장소를 활용할 수 있나요?

A1. 대학원혁신과 관련한 목적으로 활용은 가능하나, 학생회관 리모델링 등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6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제31조(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범용성 높은 기자재 및 연구 재료비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 시에는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예산운영계획서 상 기자재 구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단, 기존에 등록된 기자재의 추가 소요 발생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의 후 집행 가능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자체 심의 및 의결 후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 1억 이상의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관리 운영

 주요 Q&A

Q1.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장비·기자재의 전문기관의 심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A1. 시설장비·기자재는 연 2회 실시하며, 협약 시점(3월경) 또는 연차평가 시점(8~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 방법은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3월경)

7 기타사업운영비

제32조(기타사업운영비) 기타 대학원 혁신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위 항목에 편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집행

-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하여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각종행사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을 위해 새롭게 완화된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도서,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 유·무영적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

 주요 Q&A

Q1. 해외 출국과 복귀 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나요?

A1. 대학 자체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